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최교진 (교육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급격한 기술 혁신과 산업 고도화로 직무전환 및 경력개발을 위해 전문대에 입학하는 성인학습자가 증가함에 따라, 학교 밖 산업체 근무 및 현장 경험에 대한 학점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실무 경력의 가치를 반영하고, 이와 연계하여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단축 범위도 넓힘으로써 성인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완화하고 재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산업체 경력 등에 대한 학점 인정을 종전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에서 하던 것을 2분의 1로 확대(제15조 제1항 제3호 개정)
- 나.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 단축 범위를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점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업연한의 2분의 1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확대(제57조의2 제1호 개정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기간 : 2026. 10. 16. ~ 11. 27.

3) 행정규제 : 해당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제3호 중 “4분”을 “2분”으로 한다.

제57조의2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점이 인정된 경우에는 법 제48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업연한의 2분의 1 이내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7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5조(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)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”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.	제15조(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: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<u>4분의 1</u> 이내	3. ----- ----- -- <u>2분</u> -----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57조의2(수업연한의 단축)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	제57조의2(수업연한의 단축) --- ----- ----- -----.
1. 전문학사학위과정: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업연한의 4분의 1 이내 <u><단서 신설></u>	1. ----- ----- ----- . <u>다만,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점이 인정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업연한의 2분의 1 이내</u>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전문대학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422